[별지 제15호서식]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재란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변경신청 사항	[] 상이연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상이연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순직유족연금에서 순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순직유족연금으로 변경
	[] 기타(에서 으로 변경)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제출	→	확인・결정	→	지급
신청인		국군재정관리단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